

주택임대차법(RTA)이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 및 책임을 균형있게 다루고 있습니까?

선택 사항

- 세입자가 고의로 주택을 훼손하면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위반으로 규정한다.
- 세입자가 임대료 지불을 계속해서 지체하는 경우 집주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제공한다.
- 세입자와 집주인 중 어느 일방이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제공한다.

의견을 알려주세요

- 세입자가 임대료 지불을 반복적으로 지체하는 경우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법을 개정한다면, 계약 해지가 가능한 임대료 연체 횟수는 몇 번으로 정해야 할까요?
- 세입자가 고의로 주택을 훼손하는 경우 이를 계약 위반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되도록 주택임대차법을 개정하는 이점이 있을까요? 그렇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
-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, 계약 해지 외에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더 나은 구제책이 있을까요?

의견 개선 방법은 간단합니다!

의견 제출:



consultations@dmirs.wa.gov.au

주택임대차법(RTA) 검토에 대한 자세한 안내:



www.commerce.wa.gov.au/tenancyreview



1300 304 054

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

Department of Mines, Industry Regulation and Safety

Consumer Protection

Advice Line 1300 304 054
(for the cost of a local call statewide)

8.30am – 5.00pm Mon, Tue, Wed and Fri

9.00am – 5.00pm Thurs

Gordon Stephenson House

Level 2/140 William Street

Perth Western Australia 6000

Administration: (08) 6251 1400

Facsimile: (08) 6251 1401

National Relay Service: 13 36 77

Online

Website: www.dmirs.wa.gov.au

Email: consumer@dmirs.wa.gov.au

Mailing address

Locked Bag 100

East Perth WA 6892

Regional offices

Goldfields/Esperance (08) 9021 9494

Great Southern (08) 9842 8366

Kimberley (08) 9191 8400

Mid-West (08) 9920 9800

North-West (08) 9185 0900

South-West (08) 9722 2888



National Relay Service: 13 36 77

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(TIS) 13 14 50

This publication is available in other formats
on request to assist people with special needs.

